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8 선고 2020나13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8 선고 2020나1383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665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종렬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래

변론종결 2021. 9. 2.

판결선고 2021. 10. 2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6653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04,5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24. 접수 제2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3. 3. 정읍시 F 답 1,388㎡, J 전 582㎡, D 답 417㎡, E 답 936㎡, G 답 374㎡, H 답 198㎡, I 답 676㎡, K 전 83㎡, M 전 601㎡ 중 1/3 지분 및 L 전 29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1.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B은 2018. 1. 24.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24. 접수 제21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2018. 2.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읍시 D 답 417㎡, E 답 936㎡, G 답 374㎡, H 답 198㎡, I 답 676㎡는 F 답 5,264㎡로 합병되었고, K 전 83㎡는 J 전 665㎡로 합병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의 현황은 별지 도면 1, 2의 '토지표시사항'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정읍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7. 10. 13.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B은 2021. 8. 31.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17. 10. 13.자 차용증에는 "120,000,000원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10. 6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8,000,000원이 위 대여금의 변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184,51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184,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유류대금채무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채무일 뿐 자신의 개인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백지에 서명만을 한 채 교부하였는데 그 후 임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무연휘발유가 없으니 경유를 내려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원고의 거래장부 수첩에 기재된 “미수 184,510,000원”이라는 내용 하단에 “2018년 2월 23.일 미수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B”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재가 피고 B의 필적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녹취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동안 유류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B은 위 거래장부 수첩에 서명을 할 당시에는 그 수첩이 백지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백지로 된 수첩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위 기재 내용이 임의로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③ 피고 B도 위 유류대금채무가 자신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N의 법인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류거래 자체는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위 거래장부 수첩에는 2017. 6. 16.경부터 각 미수 및 입금 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거래장부 수첩의 내용대로 피고 B에게 위 184,51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류대금 184,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도 원고에 대하여 유류대금 및 부가가치세 미납금 등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각 채권간의 상계 주장으로 설행하여 보더라도,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위 유류대금 및 부가가치세 미납금 등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유류대금 합계 304,510,000원(= 120,000,000원 + 184,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18. 5. 25.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피고 B이 2018. 1. 24.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7.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17. 10. 13.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태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3. 18.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안양시 만안구청장, 정읍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사항증명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에 7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8년경에는 피고 B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적어도 1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에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2017. 3.

20.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2016. 3. 18. 60,000,000원, 2018. 1. 17.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7. 3. 20.자로 “피고 B은 2016. 3. 18. 피고 C에게 차용한 6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 못할 시에는 피고 C에게 피고 B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가 위

6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당시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가 약 1년이 지난 무렵에 위 이행각서가 형제지간인 피고들 사이에 수기로 작성된 점, ② 피고 C가 그 주장대로 피고 B에게 6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들 사이의 그 무렵 금전거래 내역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60,000,000원의 출처나 사용내역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60,000,000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이행각서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을 약속한 2017. 12. 31.에도 대물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8. 1. 17. 피고 B에게 추가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액 합계인 72,000,00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위 각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는바, 과연 위 이행각서가 그 작성일인 2017. 3. 20.에 작성된 것인지, 위 이행각서상의 법률관계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 ③ 설령 피고들 사이에 실제로 금전차용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의 위 이행각서상 기재된 2017.

3. 20.자 대물변제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는 피고 B이 N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바, N의 자산도 피고 B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와 피고 B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설령 피고 B이 N의 1인주주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N의 자산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C의 위 주장을 피고 B이 보유한 N 주식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직전인 2017년경 N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은 - 261,772,564원인 사실, N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O 주유소용지 597.5㎡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2018. 3. 23. 및 2018. 4. 13.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20. 11. 12. 매각되기에 이른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P 등으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표에는 N의 채권자로 Q 유한회사(변경 전 중소기업은행, 채권금액 2,891,135,094원), 신용보증기금(채권금액 689,835,195원), 경기신용보증재단(채권금액 28,296,149원), R 주식회사(채권금액 64,895,82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까지 손실이 발생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채무도 연체되는 등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② N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점, ③ N의 주요 영업자산인 주유소 부지와 건물이 경매 절차로 넘어갔음에도 N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위 주유소 부지와 건물이 매각되기에 이른 점, ④ 통상 신용보증기금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게 되어 위 채무액도 피고 B의 채무액으로 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보유한 N 주식의 그 채무에 비하여 별다른 재산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써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은 정읍시 F, J 토지에 합병되어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각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24. 접수 제2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이재환, 판사 임 솔

별지